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19호, 2016. 2. 3. 공포, 11. 4. 시행)됨에 따라,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한 취급 승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승인(안 제6조제2항 신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취급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34조의2제1항)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도록 함.

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제외(안 제47조제2항)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원료물질수출입업

자 또는 원료물질제조업자로서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을 한 후 다시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6. ~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3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를 “법 제4조제3항 단서, 제5조의2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수입 승인”을 “승인”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별지 제34호의4서식의”로, “물품도매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의2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제2항 후단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지정받은”을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2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영 제12조의2제1호·제2호”를 “영 제12조의2제2호”로, “비치”를 “비치하고 2년간 보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마약류 · 예고임시마약류 ·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의 명칭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업소의 소재지		
	소속부서		
	취급의 목적 및 개요		

	품명	수량
취급하려는 마약류		
	취급기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 예고임시마약류 ·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5서식]

마약류 수입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수입자)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명칭	
	업소의소재지	
위탁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판매자 (수출자)	대표자	
	업소의 명칭	
	업소의 소재지	
내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수입예정일	
	선적항(공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 수입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법 제4조제3항 단서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법 제4조제3항 단서, 제5조의2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 ---------- ---------- ---------- ---------- --.
제7조(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 ---------- ---------- ---------- ---------- ----------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기록의 작성·비치) ①법	제21조(기록의 작성·비치) ①--

제11조·제31조 및 영 제12조의2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와 법 제4조제2항제6호 및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마약류취급승인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도매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① ---------- 승인----------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 다음 각 호의 ---------- ----------.
1. 수출의 경우: 별지 제34호의4 서식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의 경우: 별지 제34호의5	2.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

서식 <신 설>	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 ---------- ---------- ---------- ----------.
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4조의2제2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제34조의2제3항 ----------.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생략)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을 한 후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은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